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

김지일*

❖ 요약 ❖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간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사실 과거 한·미 미사일 협정을 상기했을 때 양국은 이견 차이로 상당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은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사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과거와 달리 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한미동맹 간 특별한 갈등 없이 적극적으로 체결됐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토대로 한미동맹 간 미사일 협정에서 드러나는 역학 관계를 과거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연구법을 통해 그 해답을 도출한 결과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있어 한미동맹 간에는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능력이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본토를 향해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양국의 미사일 협정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핵심어: 한미동맹, 새로운 미사일 지침, 정책적 조응성, 북한 핵미사일, 사례연구

I. 서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반년 사이 한미동맹 간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후 양국은 미사일 협정 간 상당한 이견 차이를 보이며 동맹의 갈등 양상까지 보여 왔다. 우선 최초의 미사일 협정은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이며, 미사일 사정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의 계약이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의심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국방력 강화 차원의 강력함 무기 개발이 불가피했다. 당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미사일 ‘백곰’을 개발해 냈다. 미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

『국가전략』 2018년 제24권 4호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했으며 동맹 상대국인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제한했다.

이후 2001년과 2012년,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체결하면서도 양국의 관계는 순탄치 않은 여정을 거쳤다.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도출된 시점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내면서 사정거리를 확대해 갔고 최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 또한 북핵 위기도 조성했다. 이와 같은 안보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50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발로 사정거리 300km에 합의하며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까지 북한은 주기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연이어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미사일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확대하는 지침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반대에 부딪치며 결국 미사일 사정거리 800km에 제한을 둔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이처럼 과거 세 차례에 걸친 미사일 협정은 점진적으로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추이를 보이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반대로 인해 한미동맹 간 불협화음이 존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서 체결된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북한은 그해에만 십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미사일을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며 시험 발사해 그 완성도를 높여갔다. 이에 더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미사일을 완성해 나갔다. 한국은 대북 억지력에 상응하는 미사일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미국은 과거와 달리 한미동맹의 안보 상황을 직시하며 적극적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에 협력했다. 개정 논의 시작 시점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양국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 개발 가능한 방안에 합의했다. 한·미 간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은 특별한 갈등 없이 적극적으로 체결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 간 미사일 협정에서 드러나는 역학 관계를 4차례의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해 내는 것이다.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한·미 미사일 협정을 소재로 이론화 작업을 거친 연구는 김지일의 논문이 유일하다. 우선 김지일은 2016년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사례로 비대칭 동맹이론을 적용해 사례연구를 시행한 결과 한미동맹 간에 '정책적 조용성(policy tradeoff)

이 작용한 사실을 발견했다(김지일, 2016). 이후 그는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한 가지 사례만 집중 분석했다. 여기서 그는 박정희 정부 당시 핵미사일 개발을 시도한 사실과 한미동맹 간 핵과 미사일 정책을 분리해 내는 정치적 사실을 명확히 했다(김지일, 2017). 본 연구는 그의 사례연구 결과를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적용해 그 의미를 재평가 또는 재해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한·미 미사일 협정을 소재로 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미사일 개발사를 다룬 회고록 형식과 정책적 함의를 주장하는 논문 형식이 그것이다. 회고록 형식은 2011년 박준복의 ‘한국 미사일 40년의 신화,’ 2013년 박준복의 ‘미사일 이야기,’ 2013년 심용택의 ‘백곰, 하늘로 솟아오르다,’ 2015년 이명박의 ‘대통령의 시간,’ 2016년 안동만·김병교·조태환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 등이 있다. 논문 형식은 1996년 하경근의 ‘미사일 주권(主權)과 MTCR 가입(加入),’ 2012년 김병룡의 ‘신(新) 미사일 지침 어떤 내용 담았나?: “강력한 대북억지력 발판 확보했다”,’ 2012년 홍성표의 ‘한·미 미사일 지침 변경의 의미,’ 2012년 조성진의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효과, 제한점과 과제,’ 2012년 박진선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한국의 과제,’ 2012년 정철호의 ‘한국 미사일사거리 연장정책과 한미협상 문제,’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론화 작업이 부재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법(case study method)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문헌 연구(documentary research)를 통해 과정 추적(process tracing)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간다. 사례연구법은 사회현상에 있어 하나 또는 몇 안 되는 사례에 초점을 두는 연구 방법이다. 이것은 특정 사례에 관하여 ‘사례기술적(idiographic) 이해를 추구할 수 있으며, 법칙정립적인(nomothetic) 이론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Babbie, 2007, pp. 414-415). 물론 단 하나 또는 몇 가지 사례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Babbie, 2007, p. 417).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는 심도 있는 연구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차 자료 중심의 문헌 연구를 통해 과정 추적의 방법을 지향한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사례는 60여 년 동안의 한미동맹 간 미사일 협정이며, 시기별 자료의 접근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1979년의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과정은 30년 이전의 자료로 대체적으로 사료를 통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 기밀 해제된 미국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과 한국의 대통령기록관 자료를 활용해 과거 정치사에 대한 세밀하고 사실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경우 시기적인 제약을 받으며 사료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작용한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정부 자료, 국회 회의록,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 개괄적인 사항을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미동맹 간 행위 유형에 관한 연구이며, 그 공간적 배경에는 북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된다. 연구 범위는 한·미 간 미사일 협정의 시간적 구성을 고려할 때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이다. 물론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적 이해를 추구하는바 시간의 중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는 시점이 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네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관찰된 사실에서 공통된 유형을 찾아 나가며 이 유형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증명해 내는 귀납적(induction) 방법을 추구한다. 끝으로 글의 구성은 1장 서론을 시작으로, 2장 한·미 미사일 협정의 사례연구 및 논의의 확장, 3장 완성 단계에 진입한 북한의 핵미사일, 4장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한국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마지막 5장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II. 한·미 미사일 협정의 사례연구 및 논의의 확장

김지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 협정 간에는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한다. 여기서 ‘정책적 조응성’이란 “국가 간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점을 고려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정책의 교환”이다(김지일, 2017, p, 116). 그는 연구의 사례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2차 한·미 미사일 지침’을 들어 각각 사례연구를 실행했다. 그 결과 미국의 핵비확산(non-proliferation)에 대한 가치와 한국의 자주국방(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에 대한 가치가 상충하면서 한미동맹 간에는 그 해결책으로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기치에 부응하며 비핵화를 추구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기치에 부응하며 제한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다. 이것이 본 연구에 적용할 한·미 미사일 협정의 일반적 양상이다.

사례1.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¹⁾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이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미사일 지침의 모태는 1979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존 위컴(John Wickham)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이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말기에 사정거리 180킬로미터의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의 핵개발을 의심하던 미국은 백곰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로 간주했다. 위컴은 그해 9월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서한을 우리 정부에 발송했고 노 장관이 이에 동의하는 답신을 보냈다. 노 장관이 보낸 이 서한은 국제법상 효력은 없었지만 한·미 간 미사일 지침으로 간주됐다. 이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킬로미터, 탄두 중량은 500킬로그램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명박, 2015, p. 253) 이것이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이다.

이 양해각서 체결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미 간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하는 사실이 발견된다. 박정희 정부는 당시 핵미사일 개발을 시도했다. 그 배경으로 북한의 이례적인 호전적 행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북한은 ‘1·21 사태,’ ‘푸에블로호 사건(USS Pueblo, AGER - 2),’²⁾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³⁾ ‘미군 정찰기(EC - 121) 피격사건,’⁴⁾ ‘KAL기 납북사건,’ ‘해군 방송선 피랍 사건,’ ‘현충문 폭파 사건,’ ‘8·15 대통령 저격 사건’ 등 대남 조야를 상대로 수많은 위협적 행위를 자행했다. 그 행태는 아래 표에 명시

1) 저지는 한·미 간 주고받은 서한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문서 기밀 해제를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현재까지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 대해 근거를 둔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대통령 보고, “관문점 비공개회담.” (1968. 5. 11), EA000256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3) 대통령 보고, “최근 한미간 현안문제 교섭,” (1968. 11. 16), EA000260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4) 대통령 보고, “북괴에 의한 미군 정찰기 피격 사건 보고,” (1969. 4. 17), EA0002673,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한 바와 같이 대남 침투와 국지도발은 1,700여건에 달하며, 이 수치는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통계된 전체 수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더해 북한은 외부로부터 입수한 미사일 전력을 휴전선 부근으로 확장하며, 그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다.⁵⁾

〈표 1〉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구분	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94	405	1,340	406	228	222	241	220	26	6
침투	1,977	386	1,011	311	167	63	16	21	2	0
국지 도발	1,117	19	329	95	61	159	225	199	24	6

출처: 국방부, 2016, 『2016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p. 251. 본 현황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통계임을 밝힌다.

이러한 정세와 맞물려 1969년 7월 25일 리차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이 꿈에서 아시아 기본 전략을 공표하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공표된 전략은 타국으로부터 핵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 당사국이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단지 군사 및 경제 원조만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⁶⁾ 닉슨 독트린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안보 공백은 현실화 조짐으로 확산되어 갔다. 1970년 3월 23일 국가 안보 결정 비망록 48호(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를 통해 이 계획이 명시됐으며, 그 골자는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하는 것이었다. 미 국무성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⁷⁾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위협적 행태와 동맹국의 철군 문제를 겪으면서, 스스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5) 『동아일보』, (1975. 5. 28). “북괴, 소제 프로그 미사일 DMZ 배치 서울 사정권 안에.”; 『매일경제』, (1975. 5. 28). “북괴, 미사일 서울 사정권이동, 비행장도 신설 DMZ 부근.”

6) Richard Nixon: “Informal Remarks in Guam With Newsmen,” July 25, 1969.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2140>

7) Memorandum for Kissinger from Lynn. (March 11, 1970). “Korea Decisions.” folder: NSSM 27 2 of 2[3 of 3], box H-139; folder: NSDM 48, box H-215, NSC H-files, NP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Kissinger. (March 14, 1970). “US Programs in Korea,” folder: NSDM 48, box H-215, NSC H-files, NP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NSDM 48, “U.S. Programs in Korea,” (March 20, 1970), folder: NSDM 48, box H-215, NSC H-files, NP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을 선택했다. 그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는데(김지일, 2017, pp. 106-111), 우선 대통령이 지시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 검토 시점이 일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1월 10일 오원철을 경제 제2수석으로 임명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게 했으며, 이어 12월 27일 오원철 수석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이하 ADD)에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극비문서를 전달했다(구상희, 1998, pp. 75-76).⁸⁾ 다음으로 핵무기 운반 수단 중 미사일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당시 한국은 미국이 공여하고 역설계 가능한 나이키 허큘리스(Nike Hercules)가 확보된 상태였다(안동만 외, 2016, p. 123; pp. 209-210). 끝으로 사료를 통해 드러난 정황으로 “ADD는 첨단 미사일과 핵무기 원형을 생산하는 데 있어 직접 감독을 맡고 있다.”고 밝혀졌다(김지일, 2017, p. 11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8, pp. 144-147).⁹⁾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맞물려 충돌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책적 조용성’이 작용했다. 당시 미국은 핵비확산 정책을 기치로 전략무기제한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s Talks) 등을 통해 대탕트 분위기를 유지하려 했으며,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은 인정할 수 없는 행위였다. 사실 “미국은 핵탄두가 없는 지대지 미사일일지라도 박정희 정부가 확보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로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지일, 2017, p. 11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8, pp. 144-147).¹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며 핵포기를 촉구했다(김지일, 2017, pp. 116-119).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NPT 비준국이 되기로 결정했으며,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Jr.) 대통령은 이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¹¹⁾ 이후 1976년 1월 프랑스와 핵연료 재처리 플랜트 도입 계획을 전면적으로

8) 이 문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도탄 개발 지시’로, 첫째, 유도탄의 독자적 개발 체제를 확립하고, 둘째, 지대지 유도탄을 개발하되 1단계는 1975년 이전에 국산화를 목표를 하고, 셋째, 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진을 총동원하고 외국 전문가도 초청하며 외국과도 기술 제휴를 한다는 방침이었다.

9) Memorandum for Scowcroft, “Sale of Rocket Propulsion Technology to South Korea,” (February 4, 1975), E.O. 12958, SEC 3.3, Ford Presidential Library.

10) Memorandum for Scowcroft, “Sale of Rocket Propulsion Technology to South Korea,” (February 4, 1975), E.O. 12958, SEC 3.3, Ford Presidential Library.

11) 대통령 보고, “저헬렌’ 부차관보 면담내용,” (1975. 6. 25), EA0003517, 국가기록원 대통령

포기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핵비확산 기치에 부응하게 됐다.¹²⁾

한국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다. 나이키 허큘리스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미사일 개발은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프랑스의 도움으로 추진제 제조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미국은 미사일 개발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안동만 외, 2016, pp. 209-211).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직접 통제하길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개발에 도움을 주는 상황도 있었다. 지식이 만무했던 ADD 직원을 미 육군 유도탄 연구소와 소프트개발 회사에 파견하여 기술이전을 지원했다(구상희, 1998, p. 66; 김지일, 2016, pp. 76-77). 1978년 9월 26일 한국은 미사일 ‘백곰’을 개발해 냈고,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기치에 부응하게 됐다. 물론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한적인 미사일 개발을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비핵화로 미국의 핵비확산 기치에 부응하고,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허용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기치에 부응하는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한 것이다.

사례2.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면서 김대중 정부는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공식 발표했다. 개정 시점까지 북한은 미사일의 자체 개발과 사정거리 연장에 주력했다. 북한은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을 공수하여 이것을 역설계하기 시작했다. 역설계에 성공한 북한은 스커드-C, 노동 미사일을 개발해 내면서, 1998년 1차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 사정거리가 한반도 그리고 일본을 지나 동아시아 미군 기지로 확대된 것이었다(김지일, 2016, p. 99). 또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1차 북핵 위기를 조성하면

기록관.

12) CIA, “South Korea: Nuclear Developments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June 1978,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Telegram to SECSTATE from Amembassy Seoul, “ROK nuclear reprocessing,” (October 31, 1975), Box 11, National Security Agency, Ford Presidential Library; Telegram to SECSTATE from Amembassy Seoul, “ROK nuclear reprocessing plant: Canadian approach,” (December 16, 1975), Box 11, National Security Agency, Ford Presidential Library; Telegram to Amembassy Seoul from SECSTATE, “Korean reprocessing,” (December 12, 1975), Box 11, National Security Agency, Ford Presidential Library.

서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했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은 1989년 미국의 정찰 위성이 “영변 핵 시설에서 5MWe 원자로, 50MWe 원자로 건설현장, 핵폐기물 처리장 추정 건물, 고폭 실험장 등을 포착”(김지일, 2016, p. 108; 임수호, 2007, p. 131)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2002년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으며 한반도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조됐다.

이와 같은 안보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는 필연적 현상이었으며, 미국은 제한적이나마 한국의 자주국방 기치에 부응하며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동의했다. 실상 개정 논의는 김영삼 정부인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동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¹³⁾ 김대중 정부로 논의는 인계되어 정상회담의 의제를 거치면서도 미국의 반대에 직면했다.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에게 미사일 사정거리를 500km까지 늘려야한다고 제안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다(김지일, 2016, p. 119). 이후 양국은 1999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 문제를 두고 회담을 거쳤다. 한·미는 MTCR에서 제한하는 사정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에 이견을 달지 않으며 조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종당 2001년 10월 17일 미사일 지침 개정이 타결됐으며,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기치에 부응했다.

또한 한국은 비핵화 원칙을 추구해 나아갔다. 노태우 정부는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비핵 5원칙 선언’으로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표명이었다.¹⁴⁾ 한미동맹은 한국에 실전 배치했던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12월 18일 ‘핵부재 선언’을 통해 한국 어느 곳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¹⁵⁾ 이후 한국은 북한과의 수차례 교섭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도출해 내며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다져 나아갔다. 한국의 이러한 의지는 미국의 핵비확산 기치에 대한 부응이라고 평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이은 사정거리 확대와 북핵 위기 조성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기치에 부응하고, 한국은 미국

13) 『한겨레』. (1996. 12. 3). “한국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중.”

14) 『동아일보』. (1991. 11. 8). “핵 제조·보유·사용않겠다.”

15) 『동아일보』. (1991. 12. 18). “정부 「핵부재」 선언.”

의 핵비확산에 대한 기치에 부응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사례3.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북한은 주기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조율 끝에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도출했다. 북한은 3년 주기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으며 핵실험도 병행했다. 2006년 7월 5일 무수단리에서 2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정거리는 6,700-10,000km로 추정됐지만 발사 후 초기 실패했다. 석 달 뒤인 10월 9일 폭발 위력 1kt 이하로 추정되는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9년 4월 5일 무수단리에서 3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사정거리는 6,700-10,000km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때 3단 분리에 성공했다. 5월 25일 북한은 폭발 위력 3-4kt으로 추정되는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다시 3년 뒤 2012년 4월 13일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초기 단계에서 실패했다. 하지만 12월 12일 같은 장소에서 발사한 5차 장거리 미사일은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김지일, 2016, pp. 142-156).¹⁶⁾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은 점차 미국 본토를 향해가고 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증강하면서 한국 역시 이를 방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 미국은 제한적 입장에서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기치에 부응하며 미사일 지침 개정에도 호응했다. 개정 논의는 3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에서 부각됐는데 한국 국회에서는 미사일 주권을 찾아야한다는 입장이 활발히 논의됐으며, 사정거리를 한반도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1,000km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¹⁷⁾ 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우려하며 개정 논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김지일, 2016, pp. 160-161).¹⁸⁾ 이후 2012년

16) 『연합뉴스』. (2012. 12. 12). “북 ‘위성발사 성공... 예정 궤도 진입’ 발표.”

17) 제18대 국회회의록. (2009. 10. 21).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284회(국정감사). pp. 18-19; 제18대 국회회의록. (2009. 10. 23).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284회(국정감사). p. 49; 제18대 국회회의록. (2009. 4. 7).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82회(3차). pp. 10-18; 제18대 국회회의록. (2009. 4. 7).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82회(3차). pp. 18-72.

18) 제19대 국회회의록. (2012. 10. 2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제311회(국정감사). p. 37. 일례로 2009년 7월 2일 월터 샤프(Walter L. Sharp)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안보협의 회의에서 이 논의를 제안하면서도 10월 22일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초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규탄에 집중됐다. 『한국일보』. (2009. 7. 16). “샤프 ‘미사일지침 검토, 당장은 불필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2009. 10. 22).

4월 북한이 4차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 이상 미국은 거부할 수 없게 됐으며, 사정거리가 1,000km 이상이 아닌 800km로 조율되기 시작했다(김지일, 2016, p. 164).¹⁹⁾ 결국 '2차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12년 10월 7일부로 개정됐으며 사정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기치에 일정 부분 부응했다.

이 시기 한국은 주도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 갔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와 그리고 한·미 간 핵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시했다.²⁰⁾ 원자력연구원의 핵물질 실험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자력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후 한국은 핵 투명성에 대해 IAEA로부터 공식 인정받게 됐다(김지일, 2016, pp. 173-174).²¹⁾ 이명박 정부 시기,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 2009년 4월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Jr.)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하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발족했다(김지일, 2016, p. 175). 한국은 2차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어, 2012년 3월 26일과 27일 '핵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를 의제로 다루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의 핵비확산 기치에 적극적으로 부응했고, 미국은 미사일 개발을 확대 허용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 기치에 부응해 양국 간에는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했다.

19) "협상에서 한국은 대북 위협에 대비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최소 800km로 확장하고 탄두 중량도 현행 500kg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명목 하에 사정거리를 500-550km 이상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에 맞서 사정거리 300km와 500km는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2. 4. 28). "한국 미사일 사거리 '300km' 족쇄 벗을 듯."

20) 『연합뉴스』, (2004. 9. 18). "평화적 핵이용 4원칙 의미."

21) 2008년 6월 5일 "IAEA가 SIR(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내리며 한국이 모든 핵물질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포괄적 결론'의 승인이란 IAEA 회원국에 대해 '신중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 활동이 없음'을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통상부, (2008. 6. 3).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 핵투명성 공식 인정."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298573>

논의의 확장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한미동맹 간 미사일 협정에는 ‘정책적 조율성’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 공통적 배경은 한국의 안보 위협이 생기면서 발생됐는데, 그 중심에는 증강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었다. 일단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 있어, 북한은 호전적 침투와 도발을 자행하며 보유한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전진 배치했다. 또한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 논의가 전개되면서 한국은 안보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과 연계하여 한국은 미사일 ‘백곰’을 개발해 냈으며, 이에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원하는 범위 내의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기치에 부응했다. 또한 한국은 NPT에 참여하여 비준국이 됐으며,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미국의 핵비확산 기치에 부응했다. 한미동맹은 서로의 기치에 부응하면서 ‘정책적 조율성’이 작용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에 있어, 북한은 미사일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정거리 연장에 주력했으며, 최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더불어 핵 위기까지 조성했다. 한국은 미사일 사정거리를 500km로 연장하기를 기대했지만, 양국은 300km에 합의했다. 이 시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발표하며 비핵화를 추구했다.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에 있어, 북한은 주기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연이어 핵실험을 자행했다. 한국은 미사일 사정거리를 1,000km로 연장하기를 기대했지만, 미국의 반대 의사에 800km에 합의했다. 이 시기 한국은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비핵화를 추구했다. 결과적으로 양차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확대 허용하며 자주국방의 기치에 부응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핵비확산 기치에 부응하며 ‘정책적 조율성’이 작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은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졌을까?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와 합의한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 에 대해 과거 사례연구를 확장해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선적인

사항은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있어서도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배경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한미동맹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접점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비핵화 정책을 위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분석한다. 그 다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체결된 한미 동맹 간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과거 사례연구 결과와 다르거나 또는 새로운 양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석한다.

Ⅲ. 완성 단계에 진입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이 완성 단계에 다다른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더 이상 한국만의 안보 위협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7년을 마감하는 동안 북한은 11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엄포했다.²²⁾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예년 수준과 다르게 높은 빈도를 보이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5월 14일 05시 27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22) 김정은은 이미 2017년 이전 미사일 개발 능력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으며, 2017년 한 해 수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바로 1년전 나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는 것을 공표하였으며 지난 한해동안 그 이행을 위한 여러차의 시험발사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 2018년 1월 1일.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최대정점고도 2,110여km, 거리 780여km를 비행했으며 정상발사 각도로 환산했을 때 약 4,500-5,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²³⁾ 한·미·일 공동 비행정보 분석 결과 이 미사일은 비행에는 성공했으나 탄두 재진입에 대한 안정성 여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또한 이 도발은 대외적으로 미국 주도의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무력시위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새로운 핵투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표명과 더불어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됐다.²⁴⁾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연이어 강행됐다. 5월과 6월, 발사 장소와 시간대를 바꾸어 가며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이어 갔다. 5월 21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도발을 감행했다. 16시 59분경 평안남도 북창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500여km를 비행했다.²⁵⁾ 27일에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국방과학원이 위치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했다.²⁶⁾ 이틀만인 29일에는 05시 39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1일 북극성-2형을 발사한지 8일 만이며 비행거리는 약 450km라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다. 6월 8일에는 06시 18분경부터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발사했으며, 그 비행거리는 약 200km라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²⁷⁾

23) 『로동신문』. (2017. 5. 15).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 형시험발사 성공.”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2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24)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5. 16).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0회(2차). pp. 1-2.

25) 『한겨레』. (2017. 5. 21). “북,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들어 두번째.”

26) 『연합뉴스』. (2017. 5. 28). “공중전력 열세 김정은, 북한관 패트리엇 KN-06 성능개량.”

27) 『연합뉴스』. (2017. 6. 8). “북, 원산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 동해로 발사.”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관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미 항모전단의 연합해상훈련과 관련해 대(對)함정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 또는 미북관계,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 등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표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날짜	시간	장소	거리	종류
2017년 05월 14일	05시 27분경	평안북도 구성	780여km	IRBM(화성-12형)
2017년 05월 21일	16시 59분경	평안남도 북창	500여km	MRBM(북극성-2형)
2017년 05월 27일	—	함경남도 선덕	—	KN-6(번개-5형)
2017년 05월 29일	05시 39분경	강원도 원산	450여km	ASBM
2017년 06월 08일	06시 18분경	강원도 원산	200여km	지대함 순항미사일
2017년 07월 04일	0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933km	ICBM(화성-14형)
2017년 07월 28일	23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1,000km	ICBM(화성-14형)
2017년 08월 26일	06시 49분경	강원도 깃대령	—	단거리 탄도미사일
2017년 08월 29일	0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2,700여km	IRBM(화성-12형)
2017년 09월 03일	12시 30분경	함경북도 풍계리	—	6차 핵실험
2017년 09월 15일	0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약 3,700여km	IRBM(화성-12형)
2017년 11월 29일	03시 17분경	평안남도 평성	13,000km 이상	ICBM(화성-15형)

출처: 저자 작성

7월 4일 15시 30분, 북한은 이례적으로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ICBM 화성-14형이 최고 2,802km까지 상승해 933km를 비행했다고 전하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음을 주장했다.²⁸⁾ 이 미사일은 09시 40분경 방현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됐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 시에 ICBM급 사정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계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 및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에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북한의 발사 의도는 자체 ICBM 개발 일정에 따른 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및 미 독립기념일 계기 무력시위, 대화 국면 대비, 대미·대남 주도권 확보 및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²⁹⁾

같은 달 28일 23시 41분경,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위원장은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28) 조선중앙통신, 2017년 7월 4일.

29)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7. 5).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2회(2차). pp. 1-2.

인용하여 이번 ICBM은 고도 약 3,700km, 비행거리 약 1,000km로 지난 7월 4일 화성-14형보다 진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북한은 익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화성-14형의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³⁰⁾ 국방부는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 능력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시위와 대남 주도권 확보 및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하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³¹⁾

8월에 들어서 북한은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우선, 8월 26일 06시 49분경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후 29일 05시 57분경 평양시 순간 비행장에서 북태평양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재차 발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조한규 소장은 26일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낮은 탄도로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29일 발사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여 사정거리의 약 1/2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발사체는 일본 본토를 넘어 동쪽으로 약 2,7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29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고, 이번 발사가 태평양상 군사작전의 첫걸음이자 관 견제를 위한 전주곡으로 일본을 가로질러 북태평양 목표 수역에 명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³²⁾

다각도로 미사일 도발을 진행하던 북한은 9월 3일 12시 29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기상청은 인공 지진 5.7 규모를 감지했다. 북한은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뿐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민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

30) 조선중앙통신, 2017년 7월 29일.

31)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7. 31).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2회(3차). pp. 1-2.

32)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8. 31).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3회(3차). pp. 1-2; 조선중앙통신, 2017년 8월 29일.

는 계기로 된다.”며 핵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자평했다.³³⁾

〈표 3〉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풍계리 핵실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실험 일자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	2016년 9월 9일	2017년 9월 3일
폭발 위력	1kt 이하	3 - 4kt	6 - 7kt	6kt	10kt	50kt - 70kt 이상
지진 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5.7 (기상청)
폭탄 종류	플루토늄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추정	수소탄 주장(북한) 증폭핵분열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탄 주장(북한)

출처: 『연합뉴스』, (2017. 9. 3). “북 6차핵실험 1~6차 핵실험 장소 풍계리는 어떤 곳.”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9월 15일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0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비행장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을 향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3,7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 정보당국은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잠정 판단했다.³⁴⁾ 북한은 이 사실을 16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현지 지도와 함께 발사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 목적을 “군사력사용을 떠들어대고있는 미국의 호전성을 제압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맞받아치기 위한 공격과 반공격작전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핵탄두취급질서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행동절차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핵무력전력화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이번 발사훈련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³⁵⁾

33) 우리민족끼리 <http://www.uriminzokkiri.co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탄도로켓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수소탄’ 자체의 성공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핵무기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큰 폭발력을 보이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정할 때 경량화 기술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아산정책연구원은 진단했다. 아산정책연구원 www.asaninst.org “북한 6차 핵실험의 의미: 도박인가, 승부수인가?”

34)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9. 18).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4회(2차), p. 16.

35) 『로동신문』, (2017. 9. 1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김정은이 핵미사일 전력화에 자기만족을 표한 가운데, 국방부는 화성-12형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를 두고 북한과는 입장 차이를 보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다.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 주도의 안보리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 기조에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자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지속해 표출하고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 투발 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인 광 포위 능력을 시험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북한의 IRBM은 이미 능력 달성이 이루어져 전력화를 완료했고, ICBM은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에 근접했다는 것을 스스로 과시한 것으로 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평가했다.³⁶⁾

북한은 11월 29일 03시 17분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ICBM 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기술력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북한은 화성-15형 무기체계의 전술 기술적 제원과 동작에 대한 믿음성을 확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최대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50km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하였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믿음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는 것을 확정”했으며, “기동성과 명중성이 확고히 보장된 대륙탄도로켓트 화성-15형 무기체계는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명실공히 조선로동당식 무기체계이며 이로써 우리 국가는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켓트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자평했다.³⁷⁾

이에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이 시험 발사가 성공했으

트 《화성-12》형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36)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9. 18).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4회(2차). p. 16.

37) 북한은 “중간비행구간 자세조정 및 속도교정에 의한 명중성, 추진력벡터조종을 실현한 대출력발동기와 비추진력이 높은 발동기의 동작정확성이 검증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유도 및 안정화체계설계정수들의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새로 개발완성한 9축자행발사대차의 기동 및 권양능력과 발사계통에 대한 동작믿음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검증된 조종 및 안정화기술, 계단분리 및 시동기술, 재돌입환경에서 전투부의 믿음성들을 재확증하였다.”고 진술했다. 『로동신문』. (2017. 11. 29).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트시험발사 대성공.”

며, 정상 각도 발사 시에는 사정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진술했다.³⁸⁾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이미 핵미사일의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그 후 1년 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우리는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³⁹⁾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은 11차례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서 시간, 장소, 종류를 불문하며 최종적으로 미사일 역량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다. 또한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의 종착점에 근접하게 됐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맹국인 미국이 직면한 위협으로 다가간 것이다.

IV.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한국의 비핵화 의지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정부의 결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무·2C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드러났다.⁴⁰⁾ 대통령 취임 후 두 달 사이에 북한의 5차례 미사일 도발을 겪은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3일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ADD의 안흥 시험장을 방문해 탄도미사일 비행시험을 참관했다. “현무·2C가 북한 전역을 사정으로 하는 사거리 800km의 최첨단 무기라는 점에서 시험발사

38)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12. 1).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4회(6차). p. 7.

39) 조선중앙통신, 2017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

40)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7일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으며, 6월 8일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자주적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2017. 6. 8).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35>; 『연합뉴스』. (2017. 6. 23). “문 대통령 ‘북 전역 사정권’ 탄도탄발사 참관...북미에 메시지.”

자체로도 의미가 작지 않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게감이 확연히 달라지며,” 특히 현무 - 2C는 김정은의 전쟁 지휘 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전략무기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그 의미를 더했다.⁴¹⁾ 사실상 청와대는 초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가 외부로 전파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개정 논의는 6월 30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루어졌다고 뒤늦게 언론을 통해 전파됐다. 주요 의제는 한국의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문제였다.⁴²⁾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화하며 논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의용 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Herbert Raymond McMaster) 국가안전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하게 됐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한국 시간 10시 30분 미사일 지침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본격적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게 됐다.⁴³⁾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7일 07시 58분부터 08시 54분까지 56분간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한미동맹 공조 및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이 통화는 7월 28일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하며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41) 『연합뉴스』. (2017. 6. 23). “문 대통령 ‘북 전역 사정권’ 탄도탄발사 참관...북미에 메시지.”

42)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김정은 지휘소 등 북한의 전략적 핵심 시설은 800 - 1,000 곳인데, 주로 화강암반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있다. 문제는 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제한된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부착되는 500kg급 재래식 탄두로는 북한의 견고한 지하 시설물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군 당국은 한반도 최남단에서 북한 전역의 지하 표적을 파괴하려면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동아일보』. (2017. 7. 25). “탄두 중량 확대” 난색 표하던 미, 북핵도발에 긍정적 입장 선회.”

43) 청와대. (2017. 7. 29).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66>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⁴⁴⁾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대해 한·미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은 그달 8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26일에는 한국이 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9일에는 미국이 표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9월 1일 23시 10분부터 한미정상은 4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미동맹은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여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었으며,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신속히 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공조했다. 무엇보다도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⁴⁵⁾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9월 4일 한미정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2시 45분부터 23시 25분까지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한미정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⁴⁶⁾

44) 청와대. (2017. 8. 7). “한·미 정상통화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73>

45) 청와대. (2017. 9.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866>

46) 청와대. (2017. 9. 4).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서면브리핑.”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 양국은 군사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9월 17일 11시부터 11시 25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⁴⁷⁾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미동맹은 협력을 거듭 재확인하며,⁴⁸⁾ 2017년 11월 7일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개정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자리에서 타협된 것이었다.⁴⁹⁾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양국 정상은 세 번째 회담을 가지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하게 됐다.⁵⁰⁾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905>

47) 청와대. (2017. 9. 17). “한·미 정상 통화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031>

48) 한미동맹은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Norman Mattis)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지침 상 탄두 중량을 해지하지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2017. 10. 28).

49) 청와대. (2017. 11. 7).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 코리아패싱 논란에 중지부.”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424>

50) 청와대. (2017. 11. 7).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407>

한국의 비핵화 의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 있어 자주국방 구축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에 그 초점을 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힌다. 이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국내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 124).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있어,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의 안보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이에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 내 비핵화 의지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잘 나타났다. 2017년 9월 5일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일일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로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대답했다.⁵¹⁾

51) 청와대. (2017. 9. 28). “「CNN」 ‘Talk Asia’ 인터뷰 방송 한글 스크립트 전문.”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165>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의 연설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천명했다. 취임 후 가진 독일 베를린 코르버(Korber) 재단 연설과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현지시간)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코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향해 핵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²⁾ 또한 2017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 5원칙⁵³⁾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과거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 및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역시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⁵⁴⁾

V. 결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시간, 장소, 종류를 불문하고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개발의 완성도를 더해 갔다. 2017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북한은 그해 11월까지 총 11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최초 5월 한 달,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 평안남도 북창, 함경남도 선덕,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다양한 시간대 중·준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 6월에는 오전 시간 강원도 원산에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7월에는 오전과 오후 각각 평안북도 방현, 자강도 무평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8월 오전에는 강원도 깃대령과 평양시 순안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9월에는 폭발 위력 50kt 이상의 핵실험과 평양시 순안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끝으로 11월 새벽, 평안남도 평성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최종적으로

52) 청와대. (2017. 7. 6). “코르버 재단 초청 연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57>

53) 한반도 평화실현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이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이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다. 청와대. (2017. 11.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359>

54) 청와대. (2017. 11.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359>

발사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완성을 주장했으며, 이것은 사실로 인지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현실에 다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 한국의 대북 미사일 억지력은 강하게 요구됐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을 도출했다. 과거 3차례 미사일 협정 사례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띠며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무려 5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겪으면서 첫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사일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7월 29일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개정 협상이 공식화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서 8월 7일과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북한이 9월,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한미정상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마침내 2017년 11월 7일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발표했다.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수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과였으며, 과거 미사일 협정 사례와는 판이하게 다른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은 비핵화 의지를 굳건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하며,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국 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명확해졌는데, 한국의 국방력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나 전술핵 반입 등의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의 연설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역시 핵을 개발 또는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있어서도 한미동맹 간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 핵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기치에 부응하며 비핵화를 추구했으며,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기치에 부응하며 미사일 개발에 있어 무제한 탄두 중량을 허용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에 있어 한미동맹은 특별한 갈등을 보이지 않았으며, 예전과 다르게 미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했을까? 그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 상대국인 미국에 직면한 사실과 연계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이 완성 단계임이 표면화되면서 미국은 본토에 대한

방어 차원에 있어 동맹 상대국인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해야하는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미동맹은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면모를 갖추어야 하며, 한국은 미사일 역량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향한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경주해야 한다.

투고일: 2018.10.19

심사완료일: 2018.11.14

계재일: 2018.11.30

참고문헌

- 구상희. 1998.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더불어 30년.” 『국방과 기술』 228호. pp. 75-76.
- 국방부. 2016. 『2016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p. 251.
- 김병륜. 2012. “신(新)미사일 지침 어떤 내용 담았나?: ‘강력한 대북억지력 발판 확보했다.’” 『국방저널』 통권 제467호. pp. 32-37.
- 김지일. 2016. “포기와 연루를 넘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한미동맹 딜레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7. “박정희 정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추론과 한미동맹의 갈등과 완화 과정 연구.” 『국방정책연구』제33권 제1호. pp. 97-130.
- 박준복. 2011. 『한국 미사일 40년의 신화』. 서울: 일조각.
- _____. 2013. 『미사일 이야기』. 경기: 살림.
- 박진선. 2012.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한국의 과제.” 『군사세계』 통권197호. pp. 19-21.
- 심용택. 2013. 『백곰, 하늘로 솟아오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비화』. 서울: 기파랑.
- 안동만·김병교·조태환. 2016.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 서울: 플래닛미디어.
- 이명박. 2015. 『대통령의 시간 2008-2013』.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임수호. 2007.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 (1989-2006).”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철호. 2012. “한국 미사일사거리 연장정책과 한미협상 문제.” 『정세와 정책』 통권 197호. pp. 5-8.
- 조성진. 2012.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효과, 제한점과 과제.” 『군사세계』 통권203호. pp. 65-69.
- 하경근. 1996. “미사일 주권과 MTCR가입: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과 우리의 입장.” 『정책연구보고서 제1호』. 서울: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8. 『해외기록물 번역집 II: 1970년대 한미 관계(하)』. 대전: 국가기록원.
- 홍성표. 2012. “한·미 미사일 지침 변경의 의미.” 『북한연구논평』 통권7호. pp. 34-47.
- Babbie, Earl R. 저, 고성호 외 옮김. 2007. 『사회조사방법론 11판』. 서울: 탐슨코포레이션코리아.

- 대통령 보고, “관문점 비공개회담.” (1968. 5. 11). EA000256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 보고, “최근 한미간 현안문제 교섭,” (1968. 11. 16), EA000260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 보고, “북괴에 의한 미군 경찰기 피격 사건 보고,” (1969. 4. 17), EA0002673,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 보고, “‘저헬렌’ 부차관보 면담내용,” (1975. 6. 25), EA000351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제18대 국회회의록. (2009. 4. 7).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82회(3차).
- 제18대 국회회의록. (2009. 10. 21).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284회(국정감사).
- 제18대 국회회의록. (2009. 10. 23).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284회(국정감사).
- 제19대 국회회의록. (2012. 10. 2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제311회(국정감사).
-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5. 16).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0회(2차).
-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7. 5).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2회(2차).
-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7. 31).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2회(3차).
-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8. 31).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3회(3차).
-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9. 18).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4회(2차).
-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9. 18).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4회(2차).
- 제20대 국회회의록. (2017. 12. 1).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54회(6차).
-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2009. 10. 22).
-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2017. 10. 28).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외교통상부. (2008. 6. 3).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 핵투명성 공식 인정.”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298573>
- 청와대. (2017. 6. 8).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35>
- 청와대. (2017. 7. 6). “코르버 재단 초청 연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57>
- 청와대. (2017. 7. 29).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66>
- 청와대. (2017. 8. 7). “한·미 정상통화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73>
- 청와대. (2017. 9.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73>

go.kr/articles/866

청와대. (2017. 9. 4).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서면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905>

청와대. (2017. 9. 17). “한·미 정상 통화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031>

청와대. (2017. 9. 28). “「CNN」 ‘Talk Asia’ 인터뷰 방송 한글 스크립트 전문.”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165>

청와대. (2017. 11.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359>

청와대. (2017. 11. 7).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 코리아패싱 논란에
중지부.”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424>

청와대. (2017. 11. 7).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407>

『동아일보』. (1975. 5. 28). “북괴, 소제 프로그 미사일 DMZ 배치 서울 사정권 안에.”

『동아일보』. (1991. 11. 8). “핵 제조·보유·사용않겠다.”

『동아일보』. (1991. 12. 18). “정부 「핵부재」 선언.”

『동아일보』. (2017. 7. 25). “‘탄두 중량 확대’ 난색 표하던 미, 북핵도발에 긍정적 입장
선화.”

『로동신문』. (2017. 5. 15).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면: 지상대지상중
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 형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 (2017. 9. 1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전략탄도로
켓 《화성-12》 형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7. 11. 29).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
로켓시험발사 대성공.”

『매일경제』. (1975. 5. 28). “북괴, 미사일 서울 사정권이동, 비행장도 신설 DMZ 부근.”

『한국일보』. (2009. 7. 16). “샤프 ‘미사일지침 검토, 당장은 불필요.’”

『중앙일보』. (2012. 4. 28). “한국 미사일 사거리 ‘300km’ 족쇄 벗을 듯.”

『연합뉴스』. (2004. 9. 18). “평화적 핵이용 4원칙 의미.”

『연합뉴스』. (2012. 12. 12). “북 ‘위성발사 성공...예정 궤도 진입’ 발표.”

『연합뉴스』. (2017. 5. 28). “‘공중전력 열세’ 김정은, 북한판 패트리엇 KN-06 성능개량.”

『연합뉴스』. (2017. 6. 8). “북, 원산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 동해로 발사.”

『연합뉴스』. (2017. 6. 23). “문 대통령 ‘북 전역 사정권’ 탄도탄발사 참관...북미에 메시지.”

『연합뉴스』. (2017. 9. 3). “[북 6차핵실험] 1~6차 핵실험 장소 풍계리는 어떤 곳.”

『한겨레』. (1996. 12. 3). “한국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중.”

『한겨레』. (2017. 5. 21). “북, 탄도미사일 발사...새 정부 들어 두번째.”

조선중앙통신, 2017년 1월 1일자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7년 7월 4일자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7년 7월 29일자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7년 8월 29일자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8년 1월 1일자 보도.

CIA, “South Korea: Nuclear Developments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June 1978,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Memorandum for Kissinger from Lynn. (March 11, 1970). “Korea Decisions.” folder: NSSM 27 2 of 2[3 of 3], box H-139; folder: NSDM 48, box H-215, NSC H-files, NP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Kissinger. (March 14, 1970). “US Programs in Korea.” folder: NSDM 48, box H-215, NSC H-files, NP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Memorandum for Scowcroft, “Sale of Rocket Propulsion Technology to South Korea,” (February 4, 1975), E.O. 12958, SEC 3.3, Ford Presidential Library

NSDM 48, “U.S. Programs in Korea,” (March 20, 1970), folder: NSDM 48, box H-215, NSC H-files, NP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Telegram to SECSTATE from Amembassy Seoul, “ROK nuclear reprocessing,” (October 31, 1975), Box 11, National Security Agency, Ford Presidential Library

Telegram to Amembassy Seoul from SECSTATE, “Korean reprocessing,” (December 12, 1975), Box 11, National Security Agency, Ford Presidential Library

Telegram to SECSTATE from Amembassy Seoul, “ROK nuclear reprocessing plant: Canadian approach,” (December 16, 1975), Box 11, National Security

Agency, Ford Presidential Library

아산정책연구원. “북한 6차 핵실험의 의미: 도박인가, 승부수인가?” www.asaninst.org

우리민족끼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탄도로켓착용 수
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http://www.uriminzokkiri.com>

K C I